

#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5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1. 4.

발의자 : 김성찬 · 황주홍 · 이양수  
윤준호 · 경대수 · 오영훈  
손금주 · 박주현 · 강석진  
김태흠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  
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 
노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, 축약된 한자어,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  
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8조,  
제11조, 제8장 제목, 제45조, 제56조).

법률 제 호

**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**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호 중 “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”를 “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방치하여서는”을 “내버려두어서는”으로 한다.

제8장의 제목 중 “등화”를 “불빛”으로 한다.

제45조의 제목 중 “등화”를 “불빛”으로 한다.

제56조제9호 중 “방치한”을 “내버려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선박의 이동명령)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전시·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<u>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</u>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li> </ol> <p>제11조(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)</p> <p>①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<u>방치하여서는</u> 아니 된다. 다만,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8장 <u>등화</u> 및 신호</p> <p>제45조(<u>등화</u>의 제한) ① · ② (생 략)</p>	<p>제8조(선박의 이동명령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-----</li> </ol> <p>----- <u>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제11조(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)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내버려두어서는</u>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장 <u>불빛</u> 및 신호</p> <p>제45조(<u>불빛</u>의 제한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

